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에 대한 홍성수 교수님의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관해 학술적 논의는 물론이고 대중적 논의의 장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개진해 오시고 계십니다. 해당 주제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분이신 홍성수 교수님께서 그간의 논의를 잘 요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제문, 감사합니다. 저의 토론문은 발제문에 소개된 논점들 중에서 조금 더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지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관련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혐오표현 양상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혐오표현의 역사적 기원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고,¹⁾ 혐오표현 규제 역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전지구적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사이버 혐오표현은 최근 아주 강렬하고 응집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혐오표현은 2013년 일베 게시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3년여 만인 2016년 현재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어가 ‘혐오’가 되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라는 변화된 세태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헬조선’으로 지칭되는 팍팍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세대간 갈등, 계층간 갈등, 성별간 갈등의 극명한 표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조선’에서의 다

1) 영국법원은 18세기 초반에 지역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하는 폭동을 도발하는 자극적이고 허위의 내용을 담은 간행물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혹은 개선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개입’은 매우 공허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혐오표현이 초래하고 있는 해악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혐오표현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혐오표현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감정들의 연원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이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표현은 그 자체로 진공상태에서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자 공동체적 함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혐오표현 양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혐오표현에 대한 논란을 주도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2013년에는 일베였지만, 2015-2016년에는 메갈리아라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소녀는 왕자가 필요없어”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 한 장에서 촉발된 한국형 ‘게이머게이트 (Gamergate)’라 불릴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메갈리아를 ‘여성 일베’로 간주하며 ‘모든 종류의 혐오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갈리아로 대변되는 남성혐오의 표현들은 일베가 대변하는 혐오표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수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계시듯이, 혐오표현 개념의 핵심축 중의 하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공격과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메갈리아 게시물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을 소수자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hate speech’를 지칭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서는, 주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백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혐오표현’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혐오표현으로 보는 것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례로 성차별적인 모든 발언(sexist remarks)을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misogyny)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넓은 범위의 표현들을 금지하게 되어 오히려 실제로 금지될 필요가 있는 표현들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에만 한정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술적 논의에서 용어의 정밀성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험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입법안들은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개념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홍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대체할만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저 역시 2014년에 출간한 줄고에서 ‘혐오표현’이 ‘hate speech’의 역어로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혐오표현’보다 더 적절한 용어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혐오’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 때문에 더 가중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폭력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²⁾ 이 경우에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의 ‘hate’라기보다는, ‘싫어하고 꺼린다’라는 ‘disgus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감정 상태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구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낙지를 못 먹는 사람은 산낙지를 disgust하는 것이지 hate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³⁾ 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14년 2월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27조(품위유지), 제37조(충격·혐오감),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1호, 2호.

3)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들은 차별이나 편견 혹은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들에 대한 규제를 방송심의규정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제29조), ‘양성평등’(제30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제31조), ‘신앙의 자유 존중’(제32조)에서,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는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5조)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8조의 2호 및 3호)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규정들은 본 세미나에서 논의되고 있는 ‘혐오표현’보다는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소위 ‘부적절한 표현’들을 규제하고 있다.

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발표하고, KISO정책규정 제21조(게시물제한)⁴⁾을 신설하였는데 KISO가 '차별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한편,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는 KISO의 움직임은 2016년 6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유럽에서 '혐오표현 확산 금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형벌 규정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자율규제의 노력들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언론중재위원회가 2016년 7월 14일에 새롭게 추가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제1항은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보도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⁵⁾ 홍 교수님께서서는 발제문에서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혐오표현의 개념이 명확해야 일관성 있는 규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추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저의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저의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기제가

4) 해당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5) 정철운 (2016. 8. 1). 언론중재위, 성차별 표현 금지 조항 신설.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02>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혐오표현과 같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상 혐오표현에 대해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는 홍성수 교수님의 결론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층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개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안이 제안될 때마다 미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악마는 세부사항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마련되는 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은 늘 있으며, 법의 집행이 자의적인 국가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추후의 논의는 ‘세부사항에 숨어있는 악마’에 대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